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1회 제2차 정례회(2021. 12. 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1-131
----------	--------

2021. 12. 2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보건행정과)
- 나. 제 출 일 : 2021. 11. 16.
- 다. 회 부 일 : 2021. 11. 17.

2. 제출이유

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(정신의료기관)에 위탁운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- 1)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성산1동주민센터 3층
- 2) 시설현황 : 연면적 245㎡(사무실 포함 6실)

(단위 : 개)

계	사무실	센터장실	상담실	회의실	프로그램실
6	1	1	2	1	1

나. 위탁 범위 및 내용 :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
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시설관리 전반

- 1) 정신질환자 등록·관리 사업
- 2) 자살고위험군 지원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

3)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성 등

다. 위탁기간 : 3년 (2022. 4. 19.~2025. 4. 18.)

라. 소요예산 : 11억 6,390만원

※2022년 정신보건사업 가내시 기준으로 작성한 예산으로 추후 변동 가능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바.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위탁운영 적격 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
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5. 검토의견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중인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2022.4.18.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기 위한 것임.
-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유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악화 및 정신질환자 사회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기관·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-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 10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2016.4월 ‘○○정신건강의학과의원’ 과 위탁 협약하였고 2019.4월 재협약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음.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한 차례 연장 위탁하였기에 다가오는 위탁 만료기일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협약을 해야하는 것임.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선정방법이므로 바람직해 보임.
- 아울러, 해당 사무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준수하는 등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음.
- 다만,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직접 운영 사례가 있으므로 운영방식 차이에 따른 구민 정신건강 증진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등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음.

〈표 1.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¹⁾(마포구), (통계청)〉



구분	성별	2018년	2019년	2020년
마포구	계	20.4	20.2	19.7
	남	27.5	27.0	29.6
	여	14.0	14.0	10.9

1) 인구십만명당 자살률=(자살 사망자수÷주민등록연앙인구)×100,000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"보호의무자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